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2887 |
|------|------|

2021. 12. 31.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폐회중】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12. 3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의승 기획조정실장)

### 1. 제안이유

- 서울로 7017 운영사무 이관(푸른도시국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푸른도시국의 사무분장 중 서울로 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안 제19조제8호 삭제).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로 7017’ 운영사무가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푸른도시국 사무분장에서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나. ‘서울로 7017’ 운영 경위

- 1970년에 개통되어 노후화된 서울역 고가를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보행전용도로로 조성한 ‘서울로 7017’ 는 서울역과 철도로 단절되었던 동·서의 보행로를 연결하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의 거점이자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었음.

#### < 서울로 7017 개요 >

- 소재지 : 중구 남대문로5가 ~ 만리동1가 62 일대
- 관리면적 : 22,916.7㎡ (폭 10.3m, 최고높이 17m, 길이 1,024m)  
※ 고가 10,720.4㎡, 만리동광장 10,353.1㎡, 퇴계로 교통섬 1,843.2㎡
- 위치도 :



- 2017년 개장 당시는 푸른도시국에 신설된 서울로운영단(3급, 2018년 8월 해체)에서 1년간 전체 관리를 담당하였고, 서울관광재단에서 관광 정보센터, 관광안내소, 카페 등 8개 편의시설을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음.
- 그러나,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 포기를 밝히고 조경시설 관리, 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허브 기능 수행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위탁기간 : 2019.10.28.~2021.12.31).

#### < 민간위탁 사무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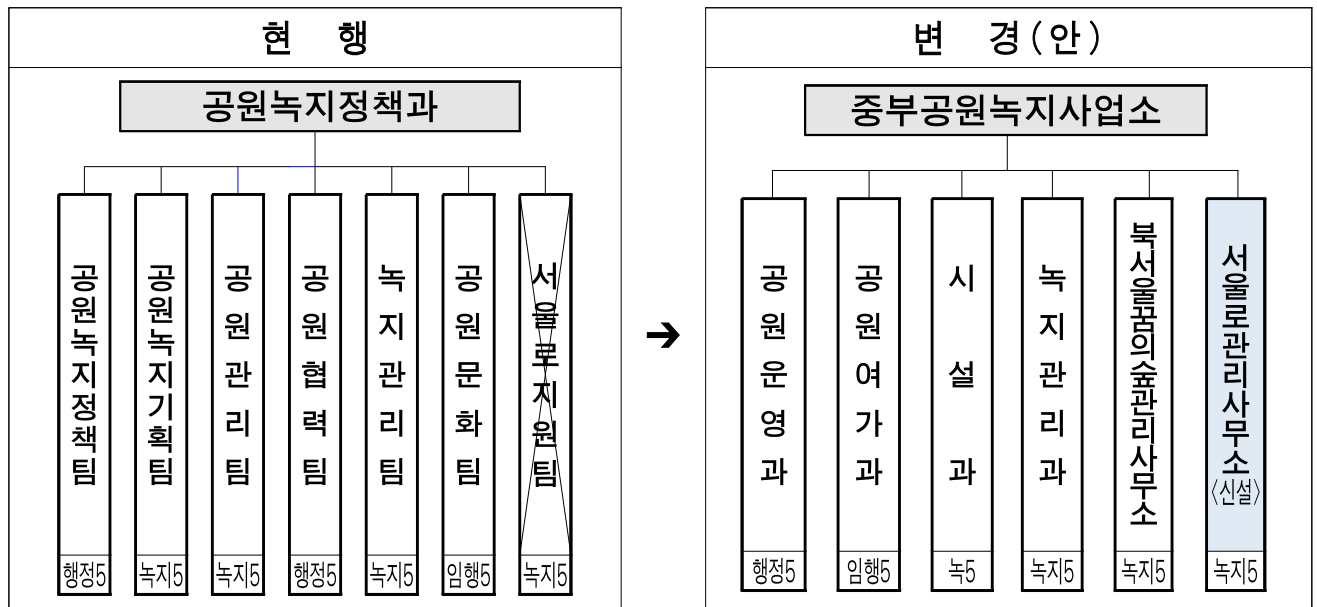
- 수탁업체 :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서울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 사 업 비 : 2,600백만원
- 사업내용
  - 경영지원 : 운영총괄, 경영·행정, 재정·회계, 편의시설 운영 등
  - 마케팅·프로그램 운영 : 기획,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대관 운영
  - 녹지·시설·안전 : 식물조경, 건축·시설, 방문객 안전, 미화 등

#### 다. ‘서울로 7017’ 사무의 이관(푸른도시국→중부녹지사업소)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서울로 7017’ 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장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였던 푸른도시국(서울로운영단→공원녹지정책과)에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관할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임.

- 사무 이관에 따라 공원녹지정책과의 서울로지원팀(1팀 4명)은 폐지되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서울로 관리사무소(1팀 8명)가 신설될 예정이다.

< 업무이관에 따른 조직 개편안 >



- ‘서울로 7017 관리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로 ▶ 시설의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 제3자 용역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예산 중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을 들고 있음.

- 현재 공원녹지정책과(서울로지원팀)에서 민간위탁 관리·감독, 보안관 관리·운영, 경영·기술지원 등과 함께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과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2020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381백만원) 중 절반가량(204백만원, 54%)이 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2021년 민간위탁 예산(26억원) 중 인건비가 58%(15억원)를 차지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는 29%(7.5억원)에 불과함.
- 서울시는 ‘서울로 7017’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 인력 및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시설물 관리책임의 재위임이 불가능하므로 직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하지만, 서울시가 직영하는 경우에도 현재 수탁기관 인원에 상응하는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유지 관리 위주의 운영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점수(84.64점)를 받았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음(10만점에 9.31점).
- 또한, 제3자 용역 수행과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의 문제점은 민간 위탁 사업을 개편하여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영 전환 사유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서울로 7017’ 을 통해 서울역 일대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최초의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887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서울로7017 운영사무 이관(푸른도시국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푸른도시국의 사무분장 중 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안 제19조제8호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9. 30.~10. 5.)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9조(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br/>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8. <u>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br/>리에 관한 사항</u></p> | <p>제19조(푸른도시국) -----<br/>-----.</p> <p>1. ~ 7.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사무분장 정비에 관한 것으로 추가 인건비 순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유 진(02-2133-6729)